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19년 12월 1주차)

2019. 12. 2. (월)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한 주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주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주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- (주간 주요 상담사례)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등록
2	캐릭터	이용
3	폰트	침해
4	프로그램	제작
5	사진	유튜브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엔에이치엔고도(주) '고도마음체' 글꼴로 작성

〈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〉

○ (영상) 영화의 일부 장면을 패러디하여 영상광고를 제작하려고 한다.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가?

-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,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며,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.
-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일성유지권, 복제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.

○ (캐릭터) 테마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캐릭터 피규어를 전시하고 있다. 홍보를 위해 카페 내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수 있는가?

- 캐릭터가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,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(제35조의3)에 해당할 수 있다.[1)]
- 만약, 캐릭터 피규어 자체를 중점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캐릭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.

○ (폰트) '인쇄용' 글꼴(폰트) 파일을 구매하여 '홈페이지 제작'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가?

-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 받은 범위(인쇄용)을 넘어 글꼴(폰트) 파

---

1) 저작권법 제35조의3(저작물의 공정한 이용)
①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,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②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이용의 목적 및 성격
2.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
3.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
4.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

일을 이용(홈페이지 제작)하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[2)]

○ **(프로그램)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정품 한글 2018을 번들로 제공받았다.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해도 되는가?**

- 해당 프로그램은 가정용, 기업용, 공공기관용 등으로 라이선스를 구분하고 있으므로, 라이선스에 기재된 이용조건 및 범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.

○ **(사진) 패션잡지의 내용 일부를 촬영하여 SNS에 패션잡지 구매 인증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?**

- 패션잡지의 내용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, 어문저작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.

〈 기타 주요 상담 〉

○ **(등록) 소프트웨어 국가 R&D 성과물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시스템에 과제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. 어떻게 해야 하는가?**

- 국가 R&D 과제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통합관리하며, 위원회는 NTIS가 제공하는 과제목록을 받아 조회시스템을 제공한다. 과제목록이 보이지 않는 경우 NTIS 고객센터(https://www.ntis.go.kr)에 연락하여 과제정보 추가를 요청해야 한다.

○ **(이용) 유명관광지에 있는 동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. 해당 사진**

2) 한국저작권위원회(www.copyright.or.kr)›자료›발간자료›조사·연구 내 '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(2019)' 사례3번 참고.

을 이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는가?

- 원칙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는 허용된다.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[3)]

○ **(침해) 저작권이 침해되어 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?**

-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은 신청할 수 있다. 그러나 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양보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, 양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한다.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조정 진행이 곤란하여 조정 불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.

○ **(제작) 이미지를 이용해서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데, 저작권료를 얼마나 내야하는 지 모르겠다.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나?**

-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. 다만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와 저작권료에 관해 따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.

○ **(유튜브) 종이접기 책을 보며 종이접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.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?**

- 종이접기 방법에 대해 법원은 “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이접기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

3) 저작권법 제35조(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)
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. 다만, 가로·공원·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

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"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[4], 종이접기 방법이 저작권법상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.

※ 공유마당의 전라남도청 '푸른전남' 글꼴로 작성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19년 12월 1주차)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4)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도6073 판결.